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0067 판결 [이득상환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006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809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이재문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여BA)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구C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2. 6. 21. 선고 2001나80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86. 8. 24.경부터 재영직물이란 상호의 견직물제조업을 경영하면서, 자모직물이라는

상호로 KK공업을 하는 피고에게 임직 가공을 하여 주고 임직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2) 원고는 위 거래 초기부터 직물거래와 함께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아, 이에 원고 명의의 배서를 한 후 제3자에게 할인하는 어음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당시 발행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인 경우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으면서 발행일을 보충하기도 하고, 어음할인을 요청받으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할인대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원고 발행의 속칭 문방구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어음할인대금에서 임직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하였고, 할인의 완급에 따라 할인율이 일정하지도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별지 어음내역표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대한 할인을 요청받고, 같은 표 “원고지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금원(합계 162,1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피고가 1992. 11. 25. 부도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원고는 소지인의 소구에 따라 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각 약속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이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의 어음상 청구권이 시효소멸할 당시, 위 각 약속어음 중 별지 어음내역표 1, 2, 8, 10 기재 각 약속어음만 발행일을 포함한 어음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어음내역표 1, 2, 8, 10 기재 약속어음에 관한 원고의 발행인 피고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는 위 어음상 청구권 소멸 당시의 정당한 어음 소지인이었으며, 이득상환청구권 외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의 할인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상환금 4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어음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규정한 [어음법 제79조](#)의 어음채무자의 “받은 이익”이라 하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어음채무자에게 그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0147 판결](#),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첨부 어음내역표(이하, ‘어음내역표’라고만 한다) 기재 각 지급일자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기재 지급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으나, 피고는 위 각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융통하여준 피고 발행 약속어음(융통어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5호증(어음기록대장), 을8, 9호증(각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양DA의 증언도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되는 반면(피고는, 발행일자 1992. 8. 17.자 어음<어음번호:05196681>의 비고란에 “차용”이라는 기재가 추가된 것을 들어 을5호증은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가 추가된 것이 을5호증의 일부 기재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을5호증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어음이 수수된 점에 대하여 원고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을5호증 기재의 어음거래 내역을 이 사건 각 어음 거래의 성격을 추단하는 한 자료로 삼음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이 사건 각 어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할인하여 준 것으로 위 지급금액이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금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심지어, 원고의 동생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위 재영직물에서 2년간 총무로 근무한 제1심 증인 이DB의

증언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진술이 없다).

다. 반면,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할인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은,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금으로 지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그 전에 피고로부터 빌려 사용한 융통어음의 결제자금 또는 그와 관련되어 수수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원고는 1986. 8. 24. 위 재영직물을 개업함에 있어서 이미 KK공업에 진출해 있던 피고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차용한 후 이를 할인받아 기계설치비용 등에 사용한 사실, 원고는 재영직물 개업 이래로 피고 부도발생시까지 피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임직 가공을 하여주고 임직료를 받는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임직료와 직접 관련 없이 원·피고가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수수한 것만 198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적어도 92회 가량 되고, 위 기간 동안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 약 99회에 걸쳐 782,932,000원 상당에 이르고, 한편 원고는 1992. 10. 28.에는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발행의 어음을 차용한 적도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 중 어음내역표 기재 순번 제1번부터 제9번까지의 약속어음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으면서, 이에 상응하는 동일한 내용(발행일, 지급기일, 어음금액이 같다)의 약속어음(소위 문방구 어음)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가 1992. 11. 25. 부도났으나 원고는 그 이후인 1992. 11. 30.에도 피고 발행 어음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한 사실(갑34호증의 80<무통장예금입금증> 참조, 원고는 이 무통장예금입금증을 피고 발행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송금한 자료라며 제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재영직물 개업 이래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보다 신용도나 금융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어음할인을 부탁하는 사람이 그 할인금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교부받는다라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오히려 어음을 빌려가는 사람이 어음대여관계에 대한 증거서류 및 그 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도처리된 사람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 부도 이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속어음을 유통하여 사용후 그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점,

(2) 어음내역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의 거래는 1992. 8. 17.부터 1992. 11. 10.까지 사이의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어음 16매 중 12매는 소외 윤EA에게 배서·양도되었고, 나머지 2매는 소외 신용금고에, 나머지 2매는 소외 개인에게 각 배서·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음내역표 기재 각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산정하면 최저 연 27%에서 최고 연 127%에 이르는 등 그 할인율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단 한 건도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된 적이 없다), 심지어 연 127%에 이르는 고율의 할인율도 있어 현실성도 없는 점(원고는 어음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할인의 완급에 따라 이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원심에서는 어음할인 이후 무통장입금시 일부는 입금시키고 일부는 임직료조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어음은 모두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4개월 남짓이고, 액면금에 있어서도 1,000여 만 원대로 큰 차이가 없고, 각 그 발행일과 지급일자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할인의 완급에 따라 이자가 차이가 났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어음할인금에서 임직료를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직료로 공제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하여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음내역표에 따르면 일부 약속어음의 경우 그 발행일 이전에 할인이 이루어지고 할인금이 지급되었는바(순번 제12번 어음의 경우 발행일이 1992. 10. 19.로 소외 신용금고에 배서·양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2. 10. 14. 그 할인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순번 제13번 어음의 경우 발행일이 1992. 10. 19.임에도 불구하고 1992. 10. 15. 및 1992. 10. 16. 그 할인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순번 제16번 어음의 경우 발행일이 1992. 11. 20.임에도 불구하고, 1992. 11. 10. 그

할인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결과가 된다), 이는 어음할인의 본질 및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어음의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액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할인료)을 공제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하고 어음을 양도하는 거래이므로, 일정한 할인율을 기준으로 지급일에 지급받을 금액을 역산하여 할인금액을 산정하면 상당히 낮은 단위의 금액까지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은 보통 만원 단위까지 표시되어 있음에도 어음내역서의 지급금액(원고주장의 할인금액)들은 백만원 내지 십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어음할인의 관행에도 반하는 점,

(3)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내역표 기재, ① 순번 제4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9. 14. 지급기일(만기, 이하 같다):1992. 12. 30. 액면금:13,860,000원) 및 순번 제5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9. 14. 지급기일:1993. 1. 15. 액면금:10,79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9. 15. 19,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04678694 발행일:1992. 6. 19. 지급기일:1992. 9. 15. 액면금:7,450,000원 및 어음번호:4678700 발행일:1992. 6. 24. 지급기일:1992. 9. 15. 액면금:11,75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완전히 일치되고, ② 순번 제7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9. 28. 지급기일:1992. 12. 28. 액면금:9,95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9. 28.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4678695 발행일:1992. 6. 19. 지급기일:1992. 9. 28. 액면금:7,00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완전히 일치되고, ③ 순번 제12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19. 지급기일:1993. 2. 20. 액면금:15,80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0. 14. 6,000,000원을, 순번 제13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19. 지급기일:1993. 1. 16. 액면금:9,78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0. 15. 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5195051 발행일:1992. 6. 25. 지급기일:1992. 10. 15. 액면금:17,20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거의 일치되어, 어음내역표 기재 위 각 지급금액은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융통하여 준 피고 발행 다른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내역표 기재, ① 순번 제1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7. 30. 지급기일:1992. 11. 27. 액면금:12,875,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8. 17.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4677405 발행일:1992. 5. 12. 지급기일:1992. 8. 17. 액면금:14,78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원고는 위 어음번호 04677405호 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5. 12. 그 할인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3959167 발행일:1992. 1. 20. 지급기일:1992. 5. 12. 액면금:13,880,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② 순번 제2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8. 17. 지급기일:1992. 12. 8. 액면금:13,58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8. 20. 8,000,000원을, 1992. 8. 21.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제3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8. 27. 지급기일:1992. 12. 18. 액면금:12,875,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8. 27. 11,6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04677410 발행일:1992. 5. 20. 지급기일:1992. 8. 20. 액면금:14,230,000원 및 어음번호:04678226 발행일:1992. 6. 5. 지급기일:1992. 8. 18. 액면금:13,86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원고는, ㉠어음번호 04677410호 약속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5. 20. 그 할인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3959464 발행일:1992. 1. 25. 지급기일:1992. 5. 20. 액면금:12,400,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어음번호 04678226호 약속어음도 임직료 5,0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할인하여 준 것으로 할인금으로 1992. 6. 8. 3,000,000원, 6. 10. 4,000,000원, 6. 15.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3960447 발행일:1992. 2. 20. 지급기일:1992. 6. 10.

액면금:14,115,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순번 제6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9. 25. 지급기일:1993. 1. 18. 액면금:13,45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9. 25.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제8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8. 지급기일:1993. 1. 28.

액면금:1,285,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0. 8. 11,4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05195052

발행일:1992. 6. 25. 지급기일:1992. 10. 8. 액면금:13,645,000원 및 어음번호:05195215

발행일:1992. 7. 6. 지급기일:1992. 10. 8. 액면금:14,79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원고는, ㉠어음번호 05195052호 약속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6. 29. 그 할인금으로 12,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4390973 발행일:1992. 4. 29. 지급기일:1992. 6. 28.

액면금:12,240,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어음번호 05195215호 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7. 6. 그 할인금으로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4389081 발행일:1992. 3. 6. 지급기일:1992. 7. 6.

액면금:12,845,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순번 제10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13. 지급기일:1992. 12. 27. 액면금:11,750,000원) 및 제11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13. 지급기일:1992. 12. 30. 액면금:11,79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0. 28.

20,000,000원을, 순번 제15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1. 2. 지급기일:1993. 3. 10.

액면금:13,75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1. 2.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

2매(어음번호:05196791 발행일:1992. 8. 21. 지급기일:1992. 10. 28. 액면금:13,158,000원 및

어음번호:05195216 발행일:1992. 7. 6. 지급기일:1992. 11. 10. 액면금:13,75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의 합계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원고는, ㉠어음번호 05195216호 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7. 6. 그 할인금으로 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4389081 발행일:1992. 3. 6. 지급기일:1992. 7. 6.

액면금:12,845,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어음번호 05196791호 어음은 임직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제13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19. 지급기일:1993. 1. 16. 액면금:9,780,000원)의 일부 할인금으로 1992. 10. 16.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순번 제14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0. 20. 지급기일:1992. 2. 18. 액면금:13,50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0. 20. 9,000,000원, 1992. 10. 21.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의 합계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5195595 발행일:1992. 7. 16. 지급기일:1992. 10. 20.

액면금:13,790,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고(원고는 어음번호 05195595호 어음도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1992. 7. 18. 그 할인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액은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13,790,000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하여 그 할인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발행일자 1992. 7. 16. 액면금

14,158,000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매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27,948,000원인 반면, 할인금 합계액은 28,000,000원으로 할인금이 액면금을 초과하여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 중에 1992. 7. 18. 전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약속어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수수된 다른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순번 제16번 약속어음(발행일:1992. 11. 20. 지급기일:1993. 3. 20. 액면금:13,450,000원)의 할인금으로 1992. 11. 10.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어음번호:05195596 발행일:1992. 7. 16. 지급기일:1992. 11. 13. 액면금:14,158,000원)의 지급기일 및 액면금액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원고는 어음번호 05195596호 약속어음 역시 자신이 할인하여 준 것으로 그 할인금으로 1992. 7. 18.

10,000,000원, 7. 22. 3,100,000원, 7. 30. 9,9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은 그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또 다른 약속어음, 즉

㉠어음번호:04390103 발행일:1992. 4. 3. 지급기일: 1992. 7. 16. 액면금:14,760,000원,

㉡어음번호:04389569 발행일:1992. 3. 25. 지급기일:1992. 7. 22. 액면금:9,100,000원,

㉢어음번호:4390430 발행일:1992. 4. 15. 지급기일:1992. 7. 28. 액면금:10,960,000원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
즈음에 이 사건 각 어음의 액면금에 근접하는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내역표 기재 각 지급금액을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 및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할인하여
주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